

철저하고 올바른 백신접종

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

- 1 농장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.
- 2
 - 농장 소유주 등이 가축을 판매(분양)하거나 도축장 출하 시 **백신접종이 실시된 가축을 출하(거래)**하여야 합니다.
 - 농장에서 가축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“**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**” 등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백신접종된 가축을 구입합니다.
- 3
 - 농장 내·외부 소독을 **매일 실시**하고, 외부인·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니다.
- 4
 -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 - 부과대상 : 항체형성률 소 80% 미만, 번식돈 60% 미만, 비육돈 30% 미만
 - *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과태료 부과 이외 동물약품(싸코백신 등) 지원 중단 및 정책자금 제외 등 불이익
- 5
 -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구제역 감염(양성)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**60% 이하로 지급**됩니다.
 - 신고지연, 소독 미실시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 시 살처분 보상금이 **추가 감액**됩니다.

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

축종	백신접종시기
소	• 송아지 : 2개월령 1차, 1개월 후 2차 접종 • 모든 소 : 4~7개월 간격으로 접종
돼지	• 모돈 : 분만 약 1개월(3~4주) 이전 접종 • 웅돈 : 4~7개월 간격으로 접종 • 자돈 : 2~3개월령 1차 접종 (다만, 긴급백신접종지역에서는 2주 후 추가 보강접종) •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(후보모돈 예정) 2개월령 1차, 1개월후 2차 접종

축종	백신접종시기
흑돼지 멧돼지	• 생후 2~3개월령 1차, 1차 접종 후 4~7개월 간격으로 접종
염소	• 어린 염소 : 2개월령 1차,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~7개월 후 보강 • 1세 이상 염소 : 1년 간격으로 접종
사슴	• 어린 사슴 : 2개월령 1차, 1개월 후 2차 접종 • 모든 사슴 : 4~7개월 간격으로 접종



구제역 의심증상 발견시 **1588-9060, 1588-4060** 으로 신고하십시오



농림축산식품부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

농림축산검역본부
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



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구제역 백신접종 주의사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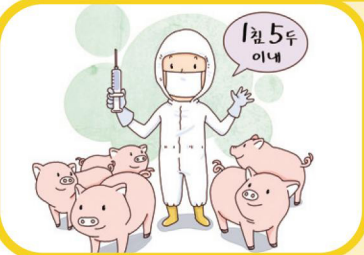
- 1** 백신은 반드시 **2~8℃**에서 냉장 보관
- 백신은 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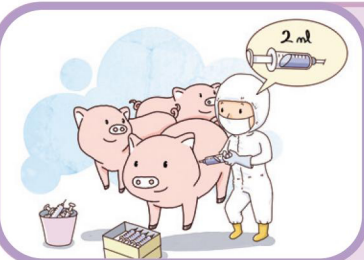
- 2** 겨울철은 따뜻하게(**20℃ 이하**)하여 접종
- 너무 높은 온도로 끓이면 백신의 효과가 없어짐
 - 항온수조가 없는 경우 백신을 실내에 두었다가 사용



- 3** 따뜻하게 한 백신은 사용(주사) 전까지 **따뜻하게 유지**
- 백신병을 옷 주머니에 넣거나 보온박스에 보관
 - 주사기, 주사바늘도 따뜻하게 해야 백신의 온도 유지가 잘됨



- 4** 주사바늘은 **1침 5두** 이내로 위생적으로 접종
- 침으로 여러마리 접종 시 주사침이 오염되고 뭉뚱해져서 접종부위 손상되어 이상육이 발생할 수 있음



- 5** **1회용** 주사기 사용 권장
- 연속주사기 사용 시 적정량의 백신(2ml)이 가축 체내에 주입된 것을 확인한 후 주사바늘 제거



- 6** 백신은 **근육 안에** 정확하게 주입
- 지방층에 주입되면 이상육이 발생되고 항체형성이 미흡할 수 있음

※ 근육(파란색 점선) 안에 정확하게 주입